

2026년 「화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참여자 모집 공고

화천군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하여 「화천형 일자리 안심공제」를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연 15명(선착순)

□ 모집기간 : 2026. 9. 28.(월) ~ 모집 완료 시까지

□ 참여대상: 근로자

-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화천군이며, 해당 기업에 5년 이상 재직이 가능한 자
-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 사업내용

- 월 50만 원*씩 5년간 적립 후 만기에 적립금(3천만 원)과 공제부금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공제부금: 기업 기여금 15만 원, 근로자 납부금 15만 원 / 지원금: 화천군 20만 원

□ 신청방법: 화천군에 사업장을 둔 상용근로자가 1인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과 근로자가 신청(5p 구비서류 참고)

- 온라인: 화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https://gwwell.kr/hwacheon>)

※ 기업 신청 후 근로자 신청 가능

Ⅱ 세부추진계획

□ 가입대상

○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정의)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화천군 내로 되어 있고, 소속 상용근로자가 1명 이상인 기업

가입 제외대상

- 1) 지원제외 업종(품목코드) * 붙임 「한국표준사업분류(통계청 고시)」 참조
 - 일반 유흥주점업(56211), 무도 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 3) 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 4)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 5) 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진흥원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근로자

-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 ※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함.
-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화천군이며, 해당 기업에 5년 이상 재직이 가능한 자
-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가입 제외대상

- 1) 해당기업의 대표자
- 2) 위 1)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 3)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화천군으로 유지가 불가능한 자
- 4) 신청일 기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 (중복관리 대상사업)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2, 청년내일저축계좌, 강원형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 지원), 강원 청년 디딤돌 두배 적금 등 지자체 자산형성 사업
- 5) 정년이 있는 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년까지의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자
- 6)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공제 가입 기간

- 가입기간: 5년
 - 정년까지의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신청 불가
- 재 가 입: 청약철회, 계약취소, 중도해지로 가입기간이 종료된 자는 재가입 가능, 단, 화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 중도해자자 중 지원금을 수혜받은 자는 제외

□ 공제적립금 구조

- 공제부금: 기업과 근로자가 납부하는 공제납부금
- 지 원 금: 화천군과 기업, 근로자의 계약 성립일에 맞춰 매칭한 금액

□ 공제부금 납부

-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부금 납부기일까지 매월 15만원 납입 원칙
 - 단, 납부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납부기일로 함.
- 공제부금 선납
 - 계약자는 신청에 의해 공제부금의 납부기일 이전에 공제부금을 납부(선납)할 수 있음.
 - 최소한도: 3개월분 이상의 합계액
 - 최대한도: 잔여 공제가입기간 이내의 월 계약자 납부금의 합계액
 - 신청서류: 신청서[서식 8] 등
- 제한사항
 - 매월 납부할 공제부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음.
 - 근로자 편의 등 정당한 목적으로 근로자 부담에 대한 기업의 일괄 입금은 가능하나 기업 부담분에 대한 근로자 명의 입금은 불가
 - 부담금 납부에 대해 부당한 임금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 부정참여에 따른 해지 대상(적발 시, 해당 기업은 3년간 안심공제 사업 참여 제한)

□ 추진절차

① 가입신청	▷	▪ 화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가입 신청 - 기업(1차 신청)→기업 신청 승인→근로자(2차 신청)→기업의 근로자 승인	기업+근로자
↓			
② 신청서 접수 및 가입심사 1차	▷	▪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화천군, 진흥원) ▪ 가입심사 1차(화천군) ▪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일모아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중복 검토	화천군·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			
③ 가입심사 2차 및 지원대상 결정	▷	▪ 신청자격 최종심사 및 지원대상 결정 ▪ 공제부금 계좌 안내(진흥원 → 기업·근로자)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			
④ 공제계약 및 적립금 관리	▷	▪ 철회·취소·납부중지 등 요청 시 업무처리 ▪ 중도해지 및 만기 시 적립금 지급 ▪ 계약 및 유지현황, 통계자료 송부(진흥원 → 화천군, 월별)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			
⑤ 지도 및 점검	▷	▪ 편법가입 및 부정수급 관리·감독 ▪ 중도해지 환급금, 만기 적립금 지급 시 부정참여 검토	화천군·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			
⑥ 평가 및 사후관리 등	▷	▪ 만족도 조사, 성과분석(사업효과, 개선방안 등) 실시 ▪ 기업복지서비스 제공 및 확대 추진	화천군·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Ⅲ 사업관리

① 가입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청약신청

- 온라인: 화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https://gwwell.kr/hwacheon>)

※ 기업 신청 후 근로자 신청 가능

○ 문의

- ☎ 033-440-2354~2355(화천군청 소득지원과), ☎ 033-256-3273(경제진흥원 일자리부)

○ 구비서류: 서류 스캔 후 홈페이지 업로드

-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납세증명서 등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 이내)

신청방법	기업 및 대표자	근로자
온라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중견 기업 확인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1개월 이내) ▶ 기업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대체 서식 사용)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근로계약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증명) ▶ 주민등록초본

○ 서류 발급방법

구 분	제 출 서 류	발 급 방 법
기업 및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홈텍스(hometax.go.kr) (민원신청 - 민원증명신청) / 행정복지센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법인등기 - 열람/서면발급)
	• 중소기업(소상공인)/중견 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fomek.or.kr)
	• 국세납세증명서	정부24(gov.kr) / 국세청홈텍스(hometax.go.kr) / 행정복지센터
	• 지방세납세증명서	정부24(gov.kr) / 행정복지센터
	•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행정복지센터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증명서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
	• 계약(청약) 신청서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대표자용)	서식 2
	•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소 방문
근로자	• 주민등록초본	정부24(gov.kr) / 행정복지센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근로자용)	서식 3

② 1차 접수 및 심사: 화천군 및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
 - 신청서류 내 자격조건 적합여부 검토
 - 서류가 미비한 경우 대상자와 연락 후 보완 조치
- 신청 근로자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복 관리
 - 일모아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사사업 중복 관리
- 신청서류 적합 시 1차 심사완료 처리
 - 1차 심사완료 처리(화천군) → 2차 심사(진흥원 이관)

③ 2차 심사 및 지원대상 결정: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 화천군 1차 심사 완료 후 접수순으로 선정
 - 신청서류 내 자격조건 적합여부 2차 검토 및 승인
 - 검토 및 승인 기간: 15 영업일 이내, 단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은 미산입
- 지원대상 결정(청약승낙 또는 거절)통보: 진흥원 → 기업·근로자

④ 공제계약 및 해지환급금 관리: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 계약의 성립(가입일): 청약자가 최초 공제부금을 납부한 일자
 - 단, 기업과 근로자의 납부 일자가 다를 경우 마지막 입금일 기준
- 최초적용월: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가 청약신청 당해 연도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한 납부 시작 월 / 신청서[서식 11]
- 계약의 성립 시
 - 지체없이 공제가입증서 교부: 진흥원 → 기업·근로자
 - 약관교부 및 설명: 진흥원 → 기업·근로자
- 청약철회 / 계약취소 / 중도해지 / 납부중지
 - (청약철회) 공제가입 완료 후 공제계약의 개시(기업근로자 모두 최초 공제 부금을 납부)가 이루어지기 이전 시점에 청약을 해지하는 경우
 - ※ 진흥원은 청약자가 청약승낙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초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청약철회 가능
 - (계약취소)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해지
 - (중도해지)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계약해지

- (납부중지) 병역, 재해, 입원 등 사유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납부중지

납부중지 사유	가능기간
병역의무 이행	해당기간
재해	6개월
입원치료	6개월
육아휴직	12개월
일시적경제사유 등	6개월

- 신청서류: 신청서[서식 7], 증명서류 등

○ 해지환급금 지급

- (지급요건) 근로자는 공제 가입기간 이상 해당 기업에서 재직
- (해지 시) 해지환급금 지급

사유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	
	기업 공제부금	근로자 공제부금
가. 공제계약의 취소 ※ 계약 후 3개월 이내 해지신청 해당	기업(이자미지급)	근로자(이자미지급)
나. 기업이 연속 3개월 공제부금 미납	근로자	근로자
다. 근로자가 연속 3개월 공제부금 미납	기업	근로자
라. 양측 모두 연속 3개월 및 10회 이상 공제부금 미납	기업	근로자
마. 공제 가입 기업이 폐업 또는 해산	근로자	근로자
바. 근로자가 업무상 산업재해로 인할 때	근로자	근로자
사. 공제 가입 근로자가 사망	근로자(상속인)	근로자(상속인)
아. 근로자의 퇴직(자진)	기업	근로자
자. 근로자의 퇴직(권고사직 등)	근로자	근로자
차. 기업의 중도해지 신청	근로자	근로자
카. 근로자의 중도해지 신청	기업	근로자

- (신청서류) 청구서[서식 5, 서식 12 중 해당서류] 등
- (지급기한) 지급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 철회 / 취소 / 중도해지 시 화천군 지원금의 수급권자

구분	귀책	수급권자		
		기업 기여금	근로자 납입금	화천군 지원금
청약철회	-	기업(이자미지급)	근로자(이자미지급)	미지급
계약취소	-	기업(이자미지급)	근로자(이자미지급)	미지급
중도해지	기업 귀책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귀책	기업	근로자	미지급

- 화천군 지원금

- (기업귀책) 기업·근로자 공제부금 및 화천군 지원금 → 모두 근로자 수령
- (근로자 귀책) 기업·근로자 공제부금 → 각각 귀속, 화천군 지원금 회수

- 중도해지 시: 화천군 지원금의 이자발생분 미지급(기업 기여금·근로자 납부금의 이자발생분은 각 수급권자에 지급)

⑤ 공제금의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 공제금

- 정의: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진흥원이 공제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구조: 공제부금(근로자 납부금, 기업 기여금) 납부누계액, 화천군 지원금 지원누계액, 공제부금에 대한 이자 합계액

○ 수급권자: 근로자(근로자가 사망한 때 상속인)

○ 지급요건: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계약자가 선택한 공제 가입기간 동안 매월 공제부금 납부
- 계약자가 선택한 공제 가입기간 이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재직
- 근로자는 가입신청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 화천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유지

○ 신청서류: 청구서[서식 6],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기타 진흥원이 별도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지급

- 화천군 지원금의 이자발생분 미지급
- 법률에서 정한 이자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등을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음.
- 일시지급이 원칙이나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할지급 가능
 - 분할지급은 수급권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한함.
 -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로부터 2년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
- 지급기한: 지급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⑥ 계약의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 사유

- 기업: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회사 합병 및 분할, 영업양수·양도, 기업명, 주소, 연락처 변경 등
- 근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변경, 인사이동 등
- ※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진흥원에 알려야 함, 미통지로 인한 행정처리 지연 또는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귀속됨.

○ 방법: 계약자는 관련자료 제출로 진흥원에 계약 변경승인 요청

- 신청서류: 신청서[서식 9, 서식 10 중 해당서류], 증빙서류 등
- 진흥원은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 변경승인 여부 통지, 공제가입증서 재교부

⑦ 지도 및 점검: 화천군 및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 편법가입 및 부정수급 관리·감독

- 편법가입 및 부정수급 관련 사전 안내
- 편법가입 및 부정수급 의심사례 제보 및 적발 시
 - 사실조사 → 관련사실 확인 시 계약해지, 지원금 회수, 기업 3년간 참여제한 조치 등
- 자체 점검 실시
 - 참여 근로자 실제 근무 여부 확인, 임금명세서 등 확인

- 붙임 1. 화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관련 서식 1부.
2. 온라인 청약신청 매뉴얼 1부. 끝.